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666
------------	-------

발의연월일 : 2023. 3. 15.

발의자 : 정춘숙 · 윤관석 · 김영진

김민석 · 김정호 · 김윤덕

최혜영 · 윤후덕 · 권칠승

김상희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급여 제도는 건강보험이 담당하기 어려운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

그러나 이런 의료급여 제도의 복지 제도로서의 특성을 악용하여 부정수급 또는 부정급여 청구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의료급여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이에 의료급여 및 의료급여비용의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부정수급을 원천차단하고 의료급여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3조).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을 “금액을”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